

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0. 1. 8
- 회부일자 : 2000. 1. 8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물품관리부서 및 관직을 재정비하고
-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변경된 예산과목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물품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조직개편으로 인한 물품관리부서 및 관직 지정을 변경
 - 총무과 ⇨ 재무과, 총무과장 ⇨ 재무과장
-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
 - 관서당 경비 ⇨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

5. 검토내역 및 의견

-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바
 - '99. 9. 7 직제 개편에 따라 총무과의 경리, 계약담당 업무가 재무과로 이관됨에 따라
물품관리부서를 총무과에서 재무과로
관직은 총무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하려는 것이며
 -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
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은 관서당경비의 목이 폐지되어
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변경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려는
것으로써

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※ 붙임 :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